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85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3
2.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등 현황조사	1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9. 12.

다. 회 부 일 : 2024. 9.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결격사유, 복무 및 보수·여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매년 150명 정도의 공중방역수의사를 선발해 왔으나 지원 인원 미달로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이 선발되는 등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중위생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중방역수의사와 유사하게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수의사의 경우 최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인력수급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공중방역수의사도 이와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집행,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제4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3년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2(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방역수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공중방역수의사 공급 현황

현행	개정안
	2. <u>공중방역수의사 배치 현황</u> 3. <u>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u> 4. <u>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u>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 ⑤ <u>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병역법」 제34조의7¹⁾과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방역수의사법」”이라 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로써,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병역법」 제55조2)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에 응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공무원인 공중방역수의사³⁾로서 가축방역업무에 3년간 복무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임.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일선 시·도에 배치되어 가축방역·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⁴⁾ 특히

- 1) 「병역법」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병역법」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①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근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중방역수의사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검시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관⁵⁾으로도 임명되는 등 국가 가축방역체계를 이루는 가축방역인력의 한 축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공중방역수의사는 매년 150명을 정원으로 하여 선발되고 있는데, 최근 정원 미달 문제가 나타나고 점차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어, 가축방역업무에 차질이나 지연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공중방역수의사 충원 현황 】

단위: 명,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원	150	150	150	150	150
충원인원	150	150	150	127	103
충원률	100.0	100.0	100.0	84.7	68.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병역법」 체계 하에서 의사(또는 수의과대학 재학생)는 일반적으로 ① 현역 수의장교, ② 공중방역수의사, ③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세 가지 형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국가검역·검사기관)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말한다.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의사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및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의사중에서 위촉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연구·계획·지도·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수의사의 주요 병역의무 이행 방법 】

구분	신분	수의사 자격	복무기간	기본급 ⁶⁾ (2024년 기준)
현역 수의장교	각군 소속 <u>현역장교</u>	<u>필요</u>	<u>3년(36개월)</u> [군사교육소집 기간 제외 (약 3주)]	2,041,400원 ~ ⁷⁾
공중방역수의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u>임기제공무원</u>			2,041,400원 ~2,243,000원 ⁸⁾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각군 소속 <u>현역병</u> 또는 <u>사회복무요원</u>	불요	<u>18개월 ~</u> <u>21개월⁹⁾</u>	640,000원 ~1,250,000원

그런데 최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되는 등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병역의무자가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더 긴 현역 수의장교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선택할 유인이 감소하였음.¹⁰⁾

6) 현역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는 기본급 외에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당(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중방역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농림축산식품부예규)에 따라 방역활동장려금(월 600,000원~900,000원)을 지급받고 있음

7) 현역 수의장교는 「군인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위로 임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년의 복무기간 중 대위로 진급하여 전역함(대위 진급에 적용되는 최저 복무기간은 중위로서 2년임) [참고) 기본급 - 중위 1호봉: 2,041,400원, 중위 2호봉: 2,142,200원, 대위 2호봉: 2,716,700원]

8) 공중방역수의사는 복무연차에 따라 1년차는 중위 1호봉, 2년차는 중위 2호봉, 3년차는 중위 3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받고 있음

9) 현역병: 육군 및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10) 2024년 1월에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가 전·현직 공중방역수의사 92명(현역 88명, 복무만료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중방역수의사 미달 원인으로는 ① 현역병에 비해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89.1%), ② 가축방역 영역에 강제 복무함으로써 수반되는 커리어 단절(46.7%), ③ 아직까지 불안정한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및 신분적 한계(38.0%) 순으로 나타났다음

[관련기사: 팜뉴스, “현장에서 보는 2023 공중방역수의사 대규모 미달사태 원인은?”, 2024. 1. 15. (2024. 10. 2. 확인), <https://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069>]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하여 발표된 연구자료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 제도개선 필요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바, 응답자들은 복무기간 단축을 제일 중요한 제도개선 필요항목으로 인식하였는데, 연구진은 그 이유를 공중방역수의사는 현역병과 달리 복무기간이 단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¹¹⁾

이러한 유인 감소는 특히 수의사관후보생의 역종분류 현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음. 수의사관후보생은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 후,¹²⁾¹³⁾ 수년이 지나 수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역종을 현역(수의장교) 또는 보충역(공중방역수의사)으로 분류하는 제도임.¹⁴⁾

수의사관후보생 중 수의장교로 분류되지 않은 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우선선발되므로,¹⁵⁾¹⁶⁾ 수의사관후보생은 곧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11) 김우찬 등, 「2019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실태조사 연구」, 『입법과 정책』 제16권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4, pp.20~23.

12)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수의 분야는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13)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은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을 대상으로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14)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3(의무·법무·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의무·법무·수의 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2. 수의 분야 현역장교: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수의장교 선발대상자의 현역장교 등 선발) ① 규칙 제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통보한 선발대상자 중에서 현역 군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초과인원은 보충역(공중방역수의사)으로 분류한다.

15) 공중방역수의사는 ① 수의사관후보생 중 수의장교로 편입되지 않은 자를 우선선발하고, ② 우

후보군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수의사관후보생 역종분류 현황 】

(단위: 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의사관후보생 中 역종분류 대상자	167	152	150	131	37
수의장교 분류	38	26	37	41	26 ¹⁷⁾
공중방역수의사 분류	129	126	113	90	1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점차 역종분류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바, 이는 수의장교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선호도가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임. 특히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정원이 미달되고 있으므로, 병역의무자가 공중방역수의사로 우선선발될 수 있는 자격인 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거나 편입 이후 병적을 유지할 유인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¹⁸⁾

선선발 후 남은 정원에 대하여 일반선발함

16)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제2조(편입인원) ②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7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하고, 해당 연도 필요인원에 부족한 인원은 법 제3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편입한다. ③ 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로 분류된 인원이 해당연도 필요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 초과인원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한다.

「**병역법**」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17) 실제 수의장교로 분류된 인원은 27명이나, 1명이 입영연기하여 26명이 최종 선발됨

개정안은 이러한 공중방역수의사의 선호도 감소와 이로 인한 정원 미달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서 공중보건 의사 제도를 규정하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의 경우 최근(2024년 2월) 법률 개정을 통하여 개정안과 같은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제도¹⁹⁾를 이미 마련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18) 일각에서는 해당 현상이 공중방역수의사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장교로 선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기존 수의사관후보생들의 전략적인 이탈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데일리벳, “공중방역수의사 미달 더 심해졌다..수의장교 피하려 대량 취소 사태까지”, 2024. 3. 8. <https://www.dailyvet.co.kr/news/prevention-hygiene/206976>, 2024. 10. 21. 확인

19)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3(공중보건 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 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보건 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 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공중보건 의사 공급 현황

2. 의료취약지 등 공중보건 의사 배치 현황

3.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보건 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안 제4조의2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중방역
수의사 수급관리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기 인력수요 전망을 반
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전망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안 제4조의2제2항에서 규정된 대로 공중방역수의사의 신규 편입 현
황 등을 고려하려면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급에 대한 전망도 필요하므
로 전망의 대상을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보완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집행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동
의한다는 입장임.

2.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등 현황조사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보수 등) ①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16조(보수 등) ① (헌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현행	개정안
② (생략)	<u>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공중방역수의사와 유사 제도로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보건 의사 제도가 있는데,

공중보건 의사 제도를 규정하는 「농어촌의료법」은 공중보건 의사의 특수지급무수당 미지급²⁰⁾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2021년 법률 개정을 통해 보수등 현황조사를 규정하여,²¹⁾ 공중보건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그런데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대응방안이 존재하지 않아,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존재함.

20)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소위12-12호

2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보수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 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보건 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예규인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서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등 미지급에 관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는데,

① 연도별 배치계획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상기관의 보수지급실태 등을 평가하여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²²⁾ 「농어촌의료법」과 같이 필수적으로 배치를 감축하는 등의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② 특별한 사유 없이 방역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가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²³⁾ 그 외의 보수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배치의 취소 또는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22)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4. 배치

나. 연도별 배치계획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상기관의 공중방역수의사 복무 관리, 보수교육 실시, 공중방역수의사 활용실태, 보수지급실태 등을 평가하여 배치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3)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8. 보수 및 후생복지

가. 보수·여비

(1) 지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보수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배치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기타수당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할 시·도지사는 배치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중 방역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배치기관으로부터 보수등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의 문언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16조제1항²⁴⁾은 단순히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등을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일 뿐,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등 지급주체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행법 제16조는, 「농어촌의료법」에서 공중보건역수의사의 보수등을 누가 지급하는지 명시적으로 규정²⁵⁾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등을 누가 지급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²⁶⁾²⁷⁾

2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수 등) ①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농어촌 등 보건의료로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역수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역수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② 공중보건역수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역수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등에 관한 현황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입장임.

‘

문 의 처

02)6788-5427

26) 현재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등에 대한 지급주체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예규인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으로, ① 보수 및 복리후생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급하고, ② 여비 및 기타 수당은 배치기관의 장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7)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8. 보수 및 후생복지

가. 보수·여비

(1) 지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보수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배치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기타수당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할 시·도지사는 배치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공중방역수의사 보수 중 방역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